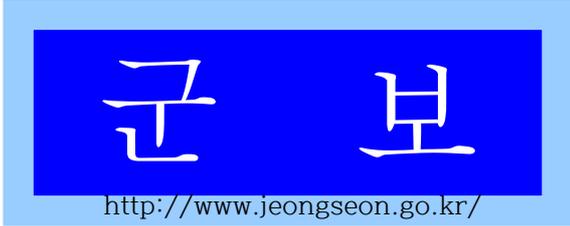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20호 2020. 3. 18.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56호 정선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2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316호 정선군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3
- 정선군 공고 제2020-325호 정선군 바람하늘공원 야영장(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11
- 정선군 공고 제2020-334호 재난취약지 재난감시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15
- 정선군 공고 제2020-344호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1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56호

정선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13일

정 선 군 수

1. 실효일자 : 2019. 09. 05.
2. 실효사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함.
3. 정선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조서(실효)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3개소	-	-	36,601	감)36,601	-	-	
실효	1	직전 근린공원	근린공원	사북읍 직전리 산227번지 일원	30,769	감)30,769	-	정고2009-117호 (2009.09.04)	
실효	2	직전 어린이공원1	어린이공원	사북읍 직전리 385-2번지 일원	1,568	감)1,568	-	정고2009-117호 (2009.09.04)	
실효	3	직전 어린이공원2	어린이공원	사북읍 직전리 543번지 일원	4,263	감)4,263	-	정고2009-117호 (2009.09.04)	

4.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316호

「정선군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정부의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이 주민 주도형 상향식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선군 농촌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농촌협약 추진위원회를 둔다.
- 지원센터의 설치(안 제8조)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선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비용의 지원 및 정산(안 제11조)
 - 정선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청) 기획실
- ☎ 전 화 : 033 - 560 - 2246
- ☎ F A X : 033 - 560 - 2592
- ☎ E-mail : atse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 주민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농촌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등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3. “활성화”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생 발전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정선군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 관리의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촌협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군수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선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중심지 및 권역 추진위원장
 4.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대표, 신활력 플러스사업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담 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농촌활성화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농촌활성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선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주민자치·농촌관광·귀농귀촌·평생학습 등의 영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지원센터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장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정선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및 사업) ① 지원센터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민간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무형의 지역자원 조사·발굴·분석·연구 및 사업화
 3.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6.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7.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관광 및 체험, 신활력 플러스, 청년 활성화 등에 대한 중간지원
 8. 마을 만들기 관련 군이 지원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 기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지원센터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지원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관리 등)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관련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1조(비용의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해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 변경 등으로 사무를 인수·인계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 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용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325호

정선군 바람하늘공원 야영장(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정선군 바람하늘공원 야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1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정선군 바람하늘공원 야영장 CCTV 설치·운영
2. 시 행 청 : 정선군
3. 공고기간 : 2020. 03. 11. ~ 03. 31.(20일간)
4. 의견제출 : 2020. 03. 11. ~ 03. 31.(20일간)
5.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6.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7. 설치 예정지

연번	설치장소	구체적장소 (지번)	운영방식	사진
1	정선군 바람하늘공원 야영장	화암면 화암동굴길 12-1	고정형	
2	정선군 바람하늘공원 야영장	화암면 화암동굴길 12-1	고정형	
3	정선군 바람하늘공원 야영장	화암면 화암동굴길 12-1	고정형	
4	정선군 바람하늘공원 야영장	화암면 화암동굴길 12-1	고정형	
5	정선군 바람하늘공원 야영장	화암면 화암동굴길 12-1	고정형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문화관광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팩스 : 033)560-2593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문화관광과(☎560-2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정선군 바람하늘공원 야영장(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예고(안)	수정제출(안)	사 유

정선군 바람하늘공원 야영장(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0-334호

재난취약지 재난감시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취약지역에 고성능 재난감시CCTV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정선군 건설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3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정선군 재난취약지 재난감시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고자 재난취약지역을 감시하는 재난감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기간 : 2020. 03. 13. ~ 04. 01.(20일간)
5.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portal>)

6. 설치장소

연번	주 소	장 소	용 도	촬영 시간	녹화 기간	운영 기관	비고
1	임계면 용산리 378-3	월탄지구	하천감시	24시간	30일	건설과	
2	임계면 송계리 235-17	임계 상류	하천감시				
3	임계면 낙천리 303-1	임계천 합류점	하천감시				
4	임계면 봉산리 산 169-1	구미정	하천감시				
5	임계면 반천리 311	반천대교	하천감시				
6	여량면 유천리 105-1	유천2리	하천감시				
7	여량면 여량리 770-10	아우라지	하천감시				
8	북평면 북평리 7876-13	항골계곡	하천감시				
9	북평면 장열리 283-1	장열교	하천감시				
10	북평면 남평리 609	남평대교	하천감시				
11	정선읍 애산리 269-23	송오리	하천감시				
12	정선읍 북살리 718-6	봉양2지구	급경사지감시				
13	정선읍 북살리 827-2	세대2지구	급경사지감시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 건설과(재해예방)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03. 13. ~ 04. 0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 정선군 건설과 재해예방팀

◦ 우편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건설과

◦ 팩스 : 033)560-2591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정선군 건설과 재해예방팀 (☎033-560-249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견서

사 업 명	정선군 재난취약지 재난감시 CCTV 설치		
-------	------------------------	--	--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H.P)	()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

재난감시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0-344호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물놀이 안전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전경보 알림 시스템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향상시키기 위한 2020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7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2020년도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2. 시 행 청 : 정선군
3. 공고기간 : 2020. 03. 17. ~ 04. 06.(20일간)
4. 의견제출 : 2020. 03. 17. ~ 04. 06.(20일간)
5.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6.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7. 설치 예정지

연번	설 치 장 소	구체적 장소(지번)	운영방식	비고
1	현수네 오토캠핑장 앞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723-7	고정형	
2	구절리 행복수양관 앞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산 318	고정형	
3	여량면 흥터마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746	고정형	
4	여량면 골지천 앞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53-1	고정형	
5	여량면 아우라지 관광지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770	고정형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안전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정선군청 안전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팩스 : 033)560-2174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안전과(☎560-2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신규설치」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예고(안)	수정제출(안)	사 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